

2014년도,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

기획재정부, 미래창조과학부,
국토교통부, 조달청, 중소기업청

목 차

1 **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듭니다.**

-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
-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
-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
- 유자격자 명부 등급기준 재편성
- 공동이행방식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
- 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
-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승인요건 명확화

2 **공공판로지원을 확대합니다.**

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
-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
- 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
-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 확대
- 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연장
- 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 수 및 지분율의 탄력 운영

3 **창조경제와 함께 합니다.**

- 용역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공동소유
-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방식 개선
-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, 재개발 범위 명확화
-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 확대

-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
-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
-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업체의 기술력 평가 도입
-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
- 신성장산업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

4

국가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.

-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
-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
-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 확대
-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
- 나라장터 사용의 민간개방 확대
-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확대 및 산정근거 공개
-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입찰서류 허위·부정 제출 시 계약 해제·해지
- 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

5

손톱 밑 가시를 뺍습니다.

-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
-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
-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
-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
-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 사유 시 공동수급체 재심사
-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합리화
-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
- 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
-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

1.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듭니다.

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

□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·중기업·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, 우수조달물품 평가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.

* 조달청 「다수공급자계약규정」, 「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」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준」 등

□ 창업초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공적 정착에 공헌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월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다수공급자계약규정,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,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준 등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												
① 다수공급자계약 - 적격성평가 면제대상	<신설>	세부품명당 1회에 한해 창업 초기기업의 적격성 평가 면제												
② 물품구매 적격심사 - 신인도 항목	<신설>	(10억원 이상제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납품실적(5점) -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기본가점 3점 ◦ 생산기술축적정도(4점) - 공장등록년수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기본점수 1점 (고시금액미만 제조, 구매입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용평가등급(30점) -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만점 ◦ 신인도(3점) - 창업초기기업은 가점 1점 												
③ 우수조달물품 - 신인도 항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align="center">신인도 심사항목</th> <th align="center"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</td> <td align="center">2점</td> </tr> <tr> <td>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</td> <td align="center">3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신인도 심사항목	배점	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	2점	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	3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align="center">신인도 심사항목</th> <th align="center"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</td> <td align="center">2점</td> </tr> <tr> <td>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)</td> <td align="center">3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신인도 심사항목	배점	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 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	2점	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 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)	3점
신인도 심사항목	배점													
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	2점													
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	3점													
신인도 심사항목	배점													
여성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 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	2점													
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(또는 INNO-Biz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, 신규채용 우수기업, 창업 초기기업 , 기술나눔 우수기업, 우수 Green-Biz기업)	3점													

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

□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최근 3년·5년간 공사 실적에서 5년·10년으로 연장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적격심사기준」 [별표]

□ 기준완화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약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시공경험 평가에서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 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적격심사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시공경험 평가기준 인정기간	최근 3년 또는 5년	최근 5년 또는 10년

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

-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.

* 조달청 지침 「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」 제6조제2항

- 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·소상공인의 공공 입찰참여 및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납품실적 인정기간	최근 3년 이내	최근 5년 이내

유자격자 명부 등급기준 재편성

□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 “등급별 유자격자명부”의 등급기준을 재편성하여 배정공사가 조정됩니다.

○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평액 5,000억원으로, 1등급 배정공사도 1,500억원으로 상향하여 편성합니다.

* 조달청 공고 「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」

□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하여 2등급 이하 중견·중소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수주기회가 확대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국가법령정보센터 >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			개 선		
	구 분	편성기준 (시평액)	배정공사		편성기준 (시평액)	배정공사	
			토 목	건 축		토 목	건 축
등급 편성 기준 및 배정 공사	1등급	~1,700억원	1,300억원 이상	600억원 이상	~5,000억원	1,500억원 이상	1,100억원 이상
	2등급	~700억원	1,300억원 ~ 700억원	600억원 ~ 500억원	~1,000억원	1,500억원 ~ 850억원	1,100억원 ~ 850억원
	3등급	~400억원	700억원 ~ 400억원	500억원 ~ 400억원	~500억원	850억원 ~ 500억원	850억원 ~ 500억원
	4등급	~270억원	400억원 ~ 270억원	400억원 ~ 270억원	~300억원	500억원 ~ 360억원	500억원 ~ 360억원
	5등급	~190억원	270억원 ~ 190억원	270억원 ~ 190억원	~180억원	360억원 ~ 200억원	360억원 ~ 200억원
	6등급	~130억원	190억원 ~ 130억원	190억원 ~ 130억원	~120억원	200억원 ~ 130억원	200억원 ~ 120억원
	7등급	~87억원	130억원 ~ 87억원	130억원 ~ 87억원	~87억원	130억원 ~ 87억원	120억원 ~ 87억원

공동이행방식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

-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의 경우,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 운용요령」 제7조 등

※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부도 발생 시 연대책임에 의해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문제 해소 필요

- 대기업의 워크아웃·부도 발생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피해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동계약 운용요령

< 제도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	연대책임	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,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

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

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품실적 · 경영상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고시금액(2.3억원)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습니다.

* 조달청 지침 「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」 제9조

□ 협상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의 입찰부담이 감소되며, 과거 납품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, 신생 ·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집니다.

* 시행일 : 2013. 12. 1.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납품실적 · 신용등급 평가기준	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설정	평가기준표 공통 적용
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

□ 지역의무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공사에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 운용요령」 제9조

※ 과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였으나,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분 발주기관에서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

□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열회사 여부 확인을 명확히 하여 지역·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동계약 운용요령

< 제도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지역의무· 주계약자방식 공동수급체 구성금지	계열회사간	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

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 명확화

-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를 파산, 해산, 부도, 법정관리, 워크아웃, 중도탈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 운용요령」 제12조

-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관리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동계약 운용요령

< 제도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공동계약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	구성원 일부가 파산, 해산, 부도 등	파산, 해산, 부도, 법정관리, 워크아웃, 중도탈퇴

2. 공공판로지원을 확대합니다.

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

-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0조 제1항 제2호

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한도	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	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의 경우는 추정가 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체결가능

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

-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(물품·용역 5%, 공사 3%)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합니다.

*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-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통해 격차해소와 여성기업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[중소기업청 홈페이지](#) > [정보공개](#) > [법령정보](#) > [소관법령](#) > [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](#)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	권고	의무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

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시에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이 85%에서 88%로 상향 조정됩니다.

* 중소기업청 고시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」 별표 2

□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제품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법령정보 > 고시/공고/훈령 >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 (입찰가격/예정가격)	85%	88%

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.3억원에서 7.9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
*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

- 공기업 등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 확대로 공동상표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3. 11. 18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(공기업·준정부기관)	2.3억원 미만	7.9억원 미만

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 확대

- 공공 공사에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 운용요령」 제2조의3

- 중소기업이 공동 도급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확대되고, 참여 중소기업은 주계약자와 대등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보장 받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동계약 운용요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공사	500억원 이상	300억원 이상

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연장

□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의 일몰기한이 '13.12.31일에서 '15.12.31일로 2년간 연장됩니다.

※ (대상사업)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“이전공공기관”의 청사 신축공사

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1578호)」 부칙 제2조

□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연된 해당 지역 업체도 이전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지역의 업체와 동등한 수주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기한	'13. 12. 31.	'15. 12. 31.

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 수 및 지분율의 탄력 운영

- 공동계약방식에서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,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구성원 수와 지분율을 각각 20%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동계약 운용요령」 제9조

- 공동수급 구성에 있어서 사업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동계약 운용요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		개 선
	구 분	최소 지분율(%)	최대구성 업체수(개)	
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 업체 수	분담이행방식		-	발주기관이 구성원 수와 지분율을 각각 2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
	공동 이행 방식	일 반	10	
		일괄·대안 (1,000억원이상)	5	
	주계약자관리방식		5	

3. 창조경제와 함께 합니다.

용역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공동소유

- 소프트웨어 용역에서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적재산권 공동소유가 모든 용역에까지 원칙적으로 확대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35조의2

- 창작자(개발자)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개발자는 공동소유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복제·배포·개작 등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용역계약 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	발주기관 소유	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

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방식 개선

□ 협상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 시 입찰 평균가의 80%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제12조

□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평가점수를 추정가격의 60%에서 80%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덤핑입찰의 유인을 제거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·육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가격 평가	추정가격의 60% 미만은 60%로 평가	추정가격의 80% 이하는 80%로 평가

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, 재개발 범위 명확화

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자보수,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58조

-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무상 하자보수 이외에 유지보수와 재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용역계약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범위	①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, ②과업 내용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 개선, ③사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	①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, ②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·구축(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),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,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, ④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

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 확대

-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시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52조

- 용역인력이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프트웨어 업체의 추가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용역계약 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소프트웨어 용역의 작업 장소	발주기관이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	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지원인력은 업체 에서 근무 가능

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

-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산업으로 선정·지원 받은 개발기술로 제작된 제품을 당초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 다목
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개발된 기술로 제작된 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수의계약 사유 추가	<신설>	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원받은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당초 수요자가 구매시

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

-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아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.

{ 예정가격×낙찰률×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(82%) } + 기술사용료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5조의2

-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, 적절한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신기술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	예정가격×낙찰률×하도급 대금 적정성 심사기준(82%)	{ 예정가격×낙찰률×하도급대 금 적정성 심사기준(82%) } + 기술사용료

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기술력 평가

- ‘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분야의 시공실적 보유정도, 핵심 기술자의 경력, 시공평가 결과 등을 평가합니다.

* 발주기관별 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

-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- 또한, 기술력 있는 업체가 시공을 맡게 됨으로써 공공 시설물의 품질이 높아집니다.

* 시행일 :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

☞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(예정)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주요 평가요소	<최저가 낙찰제> 입찰가격	<종합심사낙찰제> 입찰가격 점수 + 동일공사 시공실적, 동일공종그룹 매출 비중, 배치 기술자 시공경력 점수 등

<참고>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

-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.1.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확대시행 시점을 2016.1.1일로 2년간 유예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42조 4항

- 100억~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2015년까지 현행처럼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받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	2014. 1. 1.	2016. 1. 1.

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

- 발주방식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선택 여부를 심의할 때, 심의시기를 기본설계 이전에서 기본설계 완료 이후로 조정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99조

-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차단하고,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의 심의 시기	기본설계서 작성 전	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

신성장산업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

- 로봇,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 중 R마크(지능형 로봇 품질인증), GH마크(보건제품 품질인증)가 있는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* 조달청 고시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8조의4

- 신성장산업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조달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R마크, GH마크	<신설>	중요기술로 평가된 신성장산업제품의 1차심사 면제

4.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.

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

- 조달청은 원·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,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(“하도급 지킴이”)을 운영합니다.

* 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
-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연지급,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2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의 확인	수기 제출 및 수기 확인	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

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

□ ‘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평가합니다.

○ 또한,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차기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.

* 발주기관별 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

□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차기 입찰에 그 이행여부를 반영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

☞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(예정)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하도급 관련 평가	<신설>	세부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기초금액의 60% 이상, 입찰금액의 82% 이상인지 여부 등을 평가

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 확대

-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이 2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 됩니다.

* 조달청 지침 「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」 제9조

-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계약상 지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3. 12. 1.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대상사업 (SW개발, 운영 및 유지·보수, 정보화전략수립)	40억원 이상	20억원 이상

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

□ 3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합니다.

○ ‘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인력 고용, 공정거래, 건설안전 항목이 평가요소로 신설됩니다.

* 발주기관별 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

□ 공공 공사에서 공정거래기업 등의 낙찰 가능성이 증대되고, 이는 다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

* 시행일 :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

☞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(예정)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사회적 책임 평가 요소	<신설>	건설인력 고용, 공정거래, 건설안전

나라장터 사용의 민간개방 확대

- 조달청은 ‘13년 10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시범 개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합니다.

*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
-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단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계약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사회적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월(비영리단체), 2015년(중소기업)

☞ 조달청 나라장터(www.g2b.go.kr) > 나라장터 민간개방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나라장터 개방대상	공공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·영어조합	비영리법인(‘14년) 중소기업(‘15년) 추가

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확대 및 산정근거 공개

□ 일괄·대안입찰 공사 및 일부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도 적용됩니다.

○ 또한,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55조, 제60조,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10조

□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,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산정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, 공사계약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	일괄·대안입찰,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 포함공사	기술제안입찰 추가
산정근거	<신설>	적용대상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

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
□ 일정금액 이상(국세 5억원 또는 지방세 5억원 등)의 조세 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의5제1항,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

□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2. 14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입찰참가제한 사유	<신설>	일정금액 이상의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입찰서류 허위·부정 제출 시 계약해제·해지

□ 입찰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 제44조제1항제7호,
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일반조건」 제26조제1항제6호,
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29조제1항제7호

□ 입찰과정의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사계약 일반조건, 물품구매(제조)계약 일반조건, 용역계약 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계약의 해제·해지 사유	<신설>	입찰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

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물품·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조달통계를 작성합니다.

*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5

- 통합적인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7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조달통계 작성대상	수요기관의 자체조달 통계 제외	공공기관 전체

5. 손톱 밑 가시를 뺍습니다.

과도한 선금지급 개선

-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34조

- 일부 발주처의 선금금 과다지급 관행이 개선되며,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선금금 과다지급 개선	<신설>	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 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대로 선금 지급

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

□ 선금지급업무의 효율성 및 선금반환 조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금반환 청구 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38조

□ 합리적인 선금반환 청구 사유조정으로 선금지급업무 효율성 및 업체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선금반환 청구사유조정	사고이월 등으로 반환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	<삭제>

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

-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이 준공대가 지급이후 발급될 경우에는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94조

-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실경비에 대하여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지급함으로써, 공사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청구 시점	준공대가 신청시까지	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 가능

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

-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 확대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 제20조 및 부칙

- 공사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체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, 적정 공사비를 받게 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공사계약일반조건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	최저가낙찰제 공사	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

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 사유시 공동수급체 재심사

-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,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유 발생 시에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조정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의 적격여부 또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재심사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적격심사기준」 제9조의2,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」 제10조 제2항

- 잔존구성원만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재심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적격심사기준,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적격심사기준	<신설>	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, 부정당업자 제재, 영업정지, 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
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	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, 부정당업자 제재, 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	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, 부정당업자 제재, 영업정지, 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

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합리화

- 계속비 공사에서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해당 부분의 완공시점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60조

- 계속비 공사에 있어 시공업체의 하자책임 부담이 경감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계속비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	<신설>	완공된 부분에 한해 해당 부분 완공 시점부터 기산

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

- 단가계약에서 계약을 일부 미이행 할 경우에 국고에 귀속 되는 계약보증금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.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 제5항

-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부분을 합리적인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입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정보 > 국가계약법 시행령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계약보증금국고귀속 규정 개정	<신설>	<p>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양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</p>

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

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,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○ 또한,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,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*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제2조, 제5조

□ 적정공사비 확보로 계약상대자의 공공수주 수익이 개선됩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0.

☞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예규·유권해석 > 국가계약 법령예규 > 계약예규 전문('14.1.10. 일부개정) > 예정가격 작성기준

< 제도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계약담당공무원 주의사항	<신설>	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,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
비목별 가격결정 (정률계상 비목)	<신설>	일반관리비, 간접노무비 등은 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 준수

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

□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.

* 조달청 고시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

□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.

* 시행일 : 2014. 1. 1.

☞ 조달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

<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	종 전	개 선
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	반드시 제출	제출 생략 가능